

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10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'96. . .
제안자 : 안산시장

□ 개정사유

- 빈발하고 있는 각종 대형 재난사고의 사전예방강화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상급기관의 방침에 따라 재난방지기구인 안전지도계, 해양오염방지계, 가스안전계를 설치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기능과 재난상황에 대한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고자함

□ 주요골자

- 민방위과 교육훈련계 교육훈련담당 2명(행정7급1, 별정7급1)을 민방위계로 조정하고 잔여인력과 증원인력(지방토목. 건축 7급 1명)으로 안전지도계 설치(교육훈련계 폐지)
- 환경보호과에 증원 인력 3명(지방환경·수산6급 1, 지방환경·수산 7급 1, 지방환경·수산 8급 1)과 자체 조정인력 1명으로 해양오염방지계 설치
- 지역경제과에 2명을 증원(지방행정.화공 6급 1, 지방화공 7급 1)하고 1명을 자체조정하여 가스안전계 설치

□ 참고사항

○ 관련근거

- 경기도 자치 12200-1688('96. 5. 16)호및 경기도 자치 12200-1689('96. 5. 16)호 공문

○ 소요예산 _____ 76,212 천원

- 인 건 비 : 75,012,000원, 물품구입비 : 1,200,000원

○ 조 례 안 : 별첨

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

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(정원의 총수)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한다.

1. 본 청 : 573 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 (정원의 총수) 생략</p> <p>1. 본 청 : 567 명</p> <hr/> <p>2~6. (생 략)</p>	<p>제2조 (정원의 총수) 현행과 같음</p> <p>1. 본 청 : 573 명</p> <hr/> <p>2~6. (현행과 같음)</p>